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2152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이기열, 조준성, 한만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선아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경북 봉화군 C 임야 1233㎡에 관하여 2020.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20. 3. 4. 접수 제1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20. 3. 3. 아버지인 피고에게 경북 봉화군 C 임야 12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20.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에 대하여 9,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은 2020. 3. 3.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D에게 9,7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D이 위 돈을 도박자금을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매매계약으로 피고는 아들인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D에게, 2014. 3. 6. 44,641,590원, 2018. 8. 30. 20,000,000원, 2019. 4. 2. 4,560,000원, 2020. 3. 7. 1,900,000원, 2020. 5. 7. 3,000,000원, 2020. 6. 19. 20,000,000원, 2020. 6. 26. 3,000,000원 합계 97,101,590원을 각 대여한 사실, D은 2020. 12. 28.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9,700만 원을 2022. 2. 16.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D이 변제기 이후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181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22. 3. 29.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0. 3. 3. 전에 이미 69,201,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이 위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D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그 돈이 도박자금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하여 69,201,590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54,621,900원(2020. 1. 1. 기준 m^2 당 단가 44,300원 $\times$ 1233 m^2)인 사실, D이, E은행에 23,691,000원, F 주식회사에 3,205,000원, G은행 봉화군청지점에 49,600,000원, H은행에 6,031,000원, I 주식회사에 29,184,000원, J은행에 4,777,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K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매매계약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2020. 3. 3.자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2020. 4. 16.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와 D은 부자관계로, 위 증여계약서는 피고와 D 사이에 수기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로 이전되었다는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인 D이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20. 3. 4. 접수 제1642호로 마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조순표